

자동계좌이체 신.구약관 비교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 12 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2년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경우 은행은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제14조(약관의 변경)</p> <p>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과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점과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②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p>	<p>제 12 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1년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고금, 지방세입금에 대한 등록내역은 제외합니다.</p> <p>제14조(약관의 변경)</p> <p>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동시에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p> <p>②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p>	<p>-문구 조정 및 기간 경과에 의한 참가기관 임의해지 신설</p> <p>-공정거래위원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0028호(2012.9.20 개정) 반영</p>

<p>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p>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	---	--